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0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의 반영 등 〉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34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2204134)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통보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에의 반영 (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국토교통부 의견	7
2. 주민지원사업으로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명시(안 제19조 제1항제1호)	9
가. 개정안의 내용	9
나. 검토의견	10
다. 국토교통부 의견	11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220413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20.
3.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

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통보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에의 반영 (안 제18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 제15조제1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항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보건법」 제17조의2¹⁾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²⁾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

1) 「환경보건법」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생략)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보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조사·평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⑧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아직 공항소음과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연구사례는 없으나,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6.6%에 달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에 비해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³⁾⁴⁾.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공항주변지역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양 공항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 공항소음과 공항인근 주민의 질환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은 공항주변지역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공항주변지역 주민이 건강영향조사 의무대상이 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4127호, 동 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참고. 공항소음 관련 건강피해 연구

4) 다만 공항소음과 해당 질환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님.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127호) 】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단지, 폐광지역, <u>교통밀집지역</u>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2. ----- <u>교통밀집지역</u> , <u>공항주변지역</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참고로, 지난 제21대국회에서도 동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25호)을 발의하였는데,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조사 결정에 있어 환경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 및 향후 공항인근지역 외에 다른 건강피해 우려 지역도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제시⁵⁾된 바 있고, 동 개정안이 상정된 제400회 국회 제4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25호,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7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⁶⁾하였음.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25호) 】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5조에 따른 <u>소음대책지역</u> 및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u>소음대책 인근지역</u> 에 거주하는 주민 ③ (현행과 같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 항공기 소음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될 경우, 의료·건강증진사업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6)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법안심사소위 p.19

다만, 이 법률안은 동 의원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개정안의 개정결과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지원사업으로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명시 (안 제19조 제1항제1호)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주민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은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을 주민복지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u>교육문화사업</u>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 ----- -----. 1. ----- ----- <u>교육문화사업,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u> 등----- ----- -----.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그 예시로서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을 들고 있음.

개정안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들이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들은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의 사업으로서 주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⁷⁾, 서울시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⁸⁾는 이미 주민지원사업으로 청력

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17.>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세부내용	지원비율
1. 주민	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75/100

정밀검사,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등 건강증진·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으로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
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는 경우 주민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 지원비율이 65%이나, 개정안에 따라 의료사업 및 건강증
진사업이 명시되어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수행되는 경우 지원비율이
75%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은 현행법으로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

복지 사업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 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나.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다.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 인정하는 사업	65/100

□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경기도, 2017)

- (수행기관) 경기연구원
- (연구기간) 2017.2.13.~2017.5.31
- (주요내용) 김포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부천, 김포, 광명시 일부)과 인근지역 주민(1,011명)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설문조사 결과,
 - 최근 5년 이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일상생활 피해(43.6%)’, ‘정신적 피해(18.9%)’, ‘재산권 피해(8.3%)’, ‘신체적 피해(8.3%)’ 등의 순으로 확인

□ 서남권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건강영향 조사(서울시, 2014)

- (수행기관) 한림대 의대(주영수 교수)
- (연구기간) 2014.1.~2014.12.
- (주요내용)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등)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2곳) 및 대조지역(1곳) 성인 3,531명, 초등학생 1,1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청력, 심혈관계 질환 검사와 초등학생 정신건강 및 학습장애 검사 결과,
 - 소음피해지역의 초등학생의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증상 비율이 대조지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지역 초등학생		대조지역 초등학생
	제3종 나지구 ¹⁾	제3종 다지구 ²⁾	
총 학생수	235명	782명	134명
우울증 증상	6.00 %	4.98 %	1.47 %
ADHD	2.40 %	-	1.47 %

* ¹⁾소음영향도 80-85 미만, ²⁾소음영향도 75-80

자료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25호,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